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 2. 7.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1.15. 마포구청
장

나. 회부일자 : 96. 1. 16.

다. 상정일자: 제36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6.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 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아 제29조제2항)

3.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
로 개정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의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일반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규제는 없는가?

○ 담변요지(김창수 청소과장) : 소각량과는 관계없이 시간당 200kg 이하 용량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처음 소각할 때만 시고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 15.

제 출 자 : 마포구처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
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단,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서설
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
(안 제29조제2항)

3.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 제
20조제3항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주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卷之三

마포구충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6-2-10

시민 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중동 81-21
설명 : 쿠얼리아 80세

나. 손재의원 : 윤현근, 김우현, 최승근, 이인

단 접속인자 : 96 1 31

라 청부일자 : 06 1 31